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34263(2021.10.29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38977(2021.12.3.)
- 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39559(2021.12.7.)
- 라. 긴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(2021.12.16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대응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,

-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,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, 사적모임 규모 축소, 모임행사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<주요 조치 사항>

구분	주요 내용
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	● (운영시간 제한) 21시~익일 05시 운영 중단(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) 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 ▲ 식당카페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목욕장업 ▲ 실내체육시설
	● (운영시간 제한) 22시~익일 05시 운영 중단 ▲ 학원(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) ▲ 영화관·공연장 ▲ 카지노(내국인) ▲ 오락실 ▲ 멀티방 ▲ PC방 ▲ 파티룸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
사적모임	● (제한 강화)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↳ 식당카페에서는 '접종완료자 등' 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
사적모임 외 모임행사	● (제한 강화) - 50인 미만: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- 50~300인 미만: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- 300인 이상*: 원칙 금지,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 각종 스포츠대회, ③ (지역)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↳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(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) 필요 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: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,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(단, 인원 상한 없음) ↳ 단,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(상임위원회 등 국회(지방의회)회의 포함)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-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: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

	↳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(미접종자 49명+접종완료자 201명)과 택일 가능
기타	• (학교)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·과밀학교 밀집도 2/3으로 조정 ↳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·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* 초5/6(초 12포함), 중고 2/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.20(월)부터 적용(학교별 탄력 적용),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• (사업장) 유연근무(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) 적극 활용,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• (공공기관)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, 기타 모임,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

3.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**유행 확산 차단**을 위해 **방역실태 점검**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 **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, 취소를 고려**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특히,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 확산 방지 등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,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

- 아 래 -

가. 적용기간: 2021.12.18.(토) 0시 ~ 2022.1.2.(일) 24시

나. 적용지역: 전국 17개 시·도*

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경과규정 등

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: 2022.1.3.(월) 05시까지 적용

②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*: 2022.2.1.(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*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1)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

○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16종)

-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
-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

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미술관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업소·안마소

○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14종) 및 종교시설**

-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, 상점·마트·백화점(각 300㎡ 이상), (실외)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이·미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종교시설

○ **고위험 사업장(2종):**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**법적근거:*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**조치내용:**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: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2) 모임·행사

○ **법적근거:*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**조치내용:** 방역지침 의무화

● **(사적모임)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**

- * 식당·카페 이용 시 ‘접종완료자 등’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(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)

● **(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)** *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

- (1~49명)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·행사 가능
- (50~2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
- (300명 이상)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·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

↳ 단, **2021.12.16. 0시 이전** 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,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(가급적 취소 내지 연기, 축소 하여 개최 권고)

※ 접종완료자 등: 접종완료자, 완치자, PCR음성확인서 소지자, 18세 이하인 자(2022.2.1.부터는 0~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(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)

※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
<모임·행사(예시)>

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※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

- (시험)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2: 전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3) 교통시설

○ 대상시설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에 의한 '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 계속 적용

4) 국공립시설

○ 소관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
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
5) 사회복지시설

○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6) 사업장

○ 유연근무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 적극 활용,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,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

7) 학교(등교)

○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·과밀학교 밀집도 2/3*으로 조정하되,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·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

* 초등학교(1, 2학년 포함) 밀집도 5/6, 중·고등학교 밀집도 2/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.20(월)부터 적용(학교별 탄력 적용), 유·특수·돌봄 및 소규모·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

4.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, 인·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(종) 및 기타 미인가·미등록·무허가 시설의 경우,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 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.

5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

○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,
-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3.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전국 17개 시도지사



주무관	홍명기	행정사무관	안웅식	생활방역팀장	조우경	사회전략반장	손영래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	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	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	2021. 12. 16.		
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	이기일	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관	류근혁	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	권덕철		

협조자

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(2021. 12. 16.) 접수
중앙사고수습본부-41176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7층

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5

팩스번호 044-202-0000

/ mk7069@korea.kr

/ 비공개(5)